

예산총칙

201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15,127,876	9,453,836
일반회계	280,343,840	8,410,315
특별회계	34,784,036	1,043,521
기타특별회계	34,784,036	1,043,521
상수도사업	2,015,867	60,476
하수도사업	1,051,869	31,556
수질개선	5,073,199	152,196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52,200	13,566
의료급여기금	510,590	15,318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315,500	9,465
소득특화사업	6,736,759	202,103
농공단지조성사업	1,974,932	59,248
공영개발사업	6,320,200	189,606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332,920	309,988

제 2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 : "해당없음"

제 4 조 2010년도 계속사업 : "해당없음"

제 5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조서"와 같다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336,675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,5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